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09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김기표의 원안)	3

I. 개요

1.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09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표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1. 11.

(3) 회 부 일 : 2025. 11.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감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일몰이 도래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신규 인력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장애인 일자리 감소, 사회적 지원 체계 약화,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김기표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제2항)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감면율: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 * 발의 당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28. 12. 31. * 발의 당시 2025. 12. 31.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감면율: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30. 12. 31. ☐ 시행일: 2026. 1. 1.

* 김기표의원안 2025. 11. 11. 발의(의안번호 14096)

☐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1)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12년 인증제도 도입 이후 각종 지원정책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 현황]

(단위: 개)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수	331	391	473	566	622	694	79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현행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를 감면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촉진하려는 제도로 2010년 세법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음.

제도 도입 이후 감면율 상향 및 한도 신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적용기한이 5번 연장되어 2028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연혁]

시행연도	내 용
2011년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시행연도	내 용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발생 후 4년간 50% - 적용기한: 2013년 12월 31일
2013년	·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발생 후 5년간 50%
2014년	·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16년 12월 31일
2017년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
2020년	· 감면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3년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5년	· 감면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의 불리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최근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전체 인구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장애인 고용현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하방을 유지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장애인 및 전체 근로자 고용률 현황]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월
장애인	34.9	34.9	34.6	35.3	34.0	33.8
전체	60.9	60.1	60.5	62.1	62.6	63.5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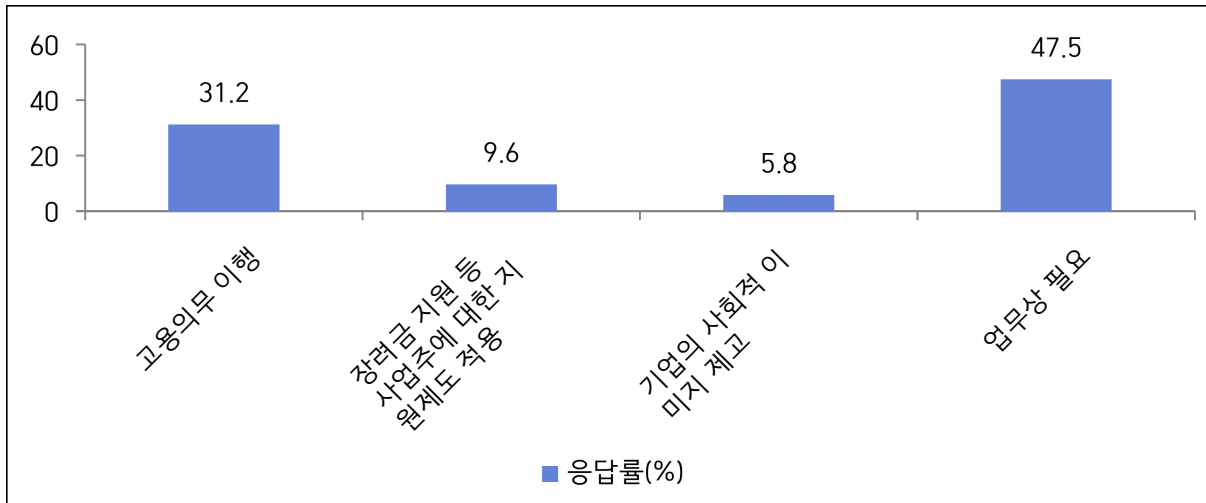
둘째, 민간 분야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통하여 장애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0.83%로 OECD 평균(2.26%)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²⁾ 민간분야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해 이러한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미흡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장애인 고용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적용을 위해 고용하고 있는 비율도 9.6%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2023. 12.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이유]



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 대상 심층조사 결과(2022년 12월말)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동 특례에 따른 세제지원 외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등 각종 수수료 비용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25년 총 528억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³⁾.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3) 지원금액(억원): ('20) 274 → ('21) 285 → ('22) 364 → ('23) 449 → ('24) 529 → ('25) 529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구매 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도 총 구매액은 목표 비율을 상회한 8,760억원(총 구매액의 1.25%)에 달함⁵⁾.

둘째,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용기한을 당장 추가로 연장하기 보다는 추후 조세 특례의 성과, 지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 ⑥ (생략)

5) 우선구매 목표 비율(%): ('19년)0.3 → ('20년~'22년)0.6 → ('23년~'24년)0.8
 우선구매 실적(%): ('19년)0.78 → ('20년)0.91 → ('21년)0.92 → ('22년)1.01 → ('23년)1.16 → ('24년)1.25